

『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상의 명칭을 “자랑스러운 구미 사람대상”으로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의 명칭 변경(안 제명 및 안 제1조, 제2조, 제6조)
 - [현행]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
 - [개정]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7조, 제8조, 제10조~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제명을 「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」로 변경하고 표준어 및 띄어쓰기 등 현재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들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보기 쉽도록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